

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
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(허수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64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24. 11. 21.

발의자 : 허수정, 이미애, 김동관,
이철훈, 김창수, 조종현,
정희열, 이해영, 배현주

1. 제안이유

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업무추진 사항을 파악하고
주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원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
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출석일자 :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
[2024. 12. 03.(화), 14:00]

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일
[2024. 12. 20.(금), 14:00]

나. 출석 대상자 : 시장, 부시장, 기획조정실장, 경제국장, 복지국장,
행정국장, 환경국장, 시민안전국장, 도시관리국장,
문화관광국장, 교육체육국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
김해시보건소장, 김해시서부보건소장,
상하수도사업소장, 장유출장소장

3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, 「김해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73조

관련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51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

제73조(시장 등의 출석요구)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·답변하여야 하며,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서면으로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